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의안

1. 안건명 :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재단을 존치하여 그간에 형성된 BIO의 국민인식 제고 효과를 지속하여 발전시키고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제명 및 재단의 명칭 변경
 -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를
→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를
→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함
- 재단의 목적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 진흥”으로 함
- 재단의 사업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후속사업 발굴추진,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진흥,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등으로 함

4. 의안 전문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6. 제안자 의견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개최로 다져진 “바이오충북”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단의 목적·명칭·사업을 변경 재단을 존치하여 엑스포 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심이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오송 바이오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재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후속사업 발굴추진
2.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진흥
3.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기관·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7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②~③ (생략)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채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생략)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점임)

○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점임시킬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